

# 블랑 써밋 74

BLANC SUMMIT 74

# 오피스텔 분양광고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블랑 써밋 74는 분양상담전화(051-747-6333)를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전화 연결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상담자께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실 경우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직접 발급받아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5.02.14.)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전매제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시 | 2025년 02월 19일(수) (09:00 ~ 17:00)      | 추첨 : 2025년 02월 20일(목) (10:00)<br>당첨자 발표 : 2025년 02월 20일(목) (11:00) | 2025년 02월 21일(금) (10:00~16:30) |
| 방 법 | 견본주택 청약                               | 견본주택 현장추첨 및 당첨자발표  | 견본주택 방문계약                      |
| 장 소 |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br>(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  |                                |

## 사업관계자 명칭

| 구분     |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      | 분양대행사                      | 분양대금관리자                |
|--------|------------------|----------------------------|------------------------|
| 상호     | (주)대우건설          | (주)태원CI&D                  | 코리아신탁(주)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202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 |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 110111-5701803             | 110111-2937831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분양신고 - 1호(2025.02.13.)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2022-주택정책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2022.11.24.)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의제처리)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30-226번지 외 2필지 일원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24,097.77m<sup>2</sup>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319,378.8538m<sup>2</sup> 중 오피스텔 연면적 65,785.9800m<sup>2</sup>
- 건축물 총별 용도

| 구분            | 용도                             |
|---------------|--------------------------------|
| 지하5층 ~ 지하2층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
| 지하1층          | 지하주차장, 로비, 기계실, 제연婶룸, 재활용보관소 등 |
| 지상1층          | 근린생활시설, 로비, 방재실 등              |
| 지상2층          | 공용공간(프라이빗 골프클럽), 실외기실 등        |
| 지상3층 ~ 지상19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
| 지상 20층        | 피난안전구역, 제연婶룸 등                 |
| 지상21층 ~ 지상49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49층 1개동 오피스텔 총 276실
- 주차대수 : 총 2,435대 중 오피스텔 472대

#### 내진성능 및 능력(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내진능력(MMI 등급)

VII-0.207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 (MMI등급, I ~ VII)으로 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미해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 :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 (주)대우건설과 코리아신탁(주)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11월 예정 (공정, 인허가변경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실)

| 타입          | 공급호실(수) | 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 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대지지분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계     |                     |        |       |
| 84 OA1/OA2  | 46      | 84.87                 | 42.46 | 127.33 | 56.49               | 183.82 | 13.75 |
| 114 OA1/OA2 | 92      | 114.14                | 55.01 | 169.15 | 75.97               | 245.12 | 18.50 |

|             |    |        |       |        |       |        |       |
|-------------|----|--------|-------|--------|-------|--------|-------|
| 115 OA1/0A2 | 46 | 115.79 | 56.13 | 171.92 | 77.07 | 248.99 | 18.76 |
| 118 OA1/0A2 | 92 | 118.49 | 56.17 | 174.66 | 78.88 | 253.54 | 19.20 |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m^2$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m^2$ )  $\times$  0.3025 또는 면적( $m^2$ )  $\div$  3.3058)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 VAT포함)

| 타입     | 동호<br>(라인)<br>구분 | 총<br>구분 | 호실수   | 분양가 |             |             |            | 계약금(5%)     |            | 중도금(60%)   |            |            |            |            |            | 잔금(35%)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840A1  | 201동<br>6호       |         | 3     | 1   | 208,489,737 | 355,009,330 | 35,500,933 | 599,000,000 | 10,000,000 | 19,95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209,650,000 |
|        |                  |         | 4~5   | 2   | 215,450,997 | 366,862,730 | 36,686,273 | 619,000,000 | 10,000,000 | 20,95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216,650,000 |
|        |                  |         | 6~9   | 4   | 222,412,257 | 378,716,130 | 37,871,613 | 639,000,000 | 10,000,000 | 21,95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223,650,000 |
|        |                  |         | 10~17 | 8   | 229,373,517 | 390,569,530 | 39,056,953 | 659,000,000 | 10,000,000 | 22,95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230,650,000 |
|        |                  |         | 18    | 1   | 228,677,391 | 389,384,190 | 38,938,419 | 657,000,000 | 10,000,000 | 22,85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65,700,000 | 229,950,000 |
|        |                  |         | 19    | 1   | 227,981,265 | 388,198,850 | 38,819,885 | 655,000,000 | 10,000,000 | 22,75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229,250,000 |
|        |                  |         | 21    | 1   | 234,246,399 | 398,866,910 | 39,886,691 | 673,000,000 | 10,000,000 | 23,65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235,550,000 |
|        |                  |         | 22    | 1   | 234,942,525 | 400,052,250 | 40,005,225 | 675,000,000 | 10,000,000 | 23,75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236,250,000 |
|        |                  |         | 23    | 1   | 234,246,399 | 398,866,910 | 39,886,691 | 673,000,000 | 10,000,000 | 23,65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235,550,000 |
|        |                  |         | 24    | 1   | 234,942,525 | 400,052,250 | 40,005,225 | 675,000,000 | 10,000,000 | 23,75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236,250,000 |
|        |                  |         | 31~39 | 9   | 245,732,478 | 418,425,020 | 41,842,502 | 706,000,000 | 10,000,000 | 25,3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247,100,000 |
|        |                  |         | 40~49 | 10  | 259,654,998 | 442,131,820 | 44,213,182 | 746,000,000 | 10,000,000 | 27,3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261,100,000 |
| 840A2  | 201동<br>6호       |         | 25~28 | 4   | 226,937,076 | 386,420,840 | 38,642,084 | 652,000,000 | 10,000,000 | 22,6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65,200,000 | 228,200,000 |
|        |                  |         | 29    | 1   | 229,373,517 | 390,569,530 | 39,056,953 | 659,000,000 | 10,000,000 | 22,95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230,650,000 |
|        |                  |         | 30    | 1   | 240,859,596 | 410,127,640 | 41,012,764 | 692,000,000 | 10,000,000 | 24,6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242,200,000 |
| 1140A1 | 201동<br>2호       |         | 3     | 1   | 277,754,274 | 472,950,660 | 47,295,066 | 798,000,000 | 10,000,000 | 29,9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279,300,000 |
|        |                  |         | 4~5   | 2   | 286,803,912 | 488,360,080 | 48,836,008 | 824,000,000 | 10,000,000 | 31,2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288,400,000 |
|        |                  |         | 6~9   | 4   | 296,201,613 | 504,362,170 | 50,436,217 | 851,000,000 | 10,000,000 | 32,55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85,100,000 | 297,850,000 |
|        |                  |         | 10~16 | 7   | 305,599,314 | 520,364,260 | 52,036,426 | 878,000,000 | 10,000,000 | 33,9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87,800,000 | 307,300,000 |
|        |                  |         | 17    | 1   | 304,555,125 | 518,586,250 | 51,858,625 | 875,000,000 | 10,000,000 | 33,75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306,250,000 |
|        |                  |         | 33~39 | 7   | 327,179,220 | 557,109,800 | 55,710,980 | 940,000,000 | 10,000,000 | 37,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329,000,000 |
|        |                  |         | 40~49 | 10  | 345,626,559 | 588,521,310 | 58,852,131 | 993,000,000 | 10,000,000 | 39,650,000 | 99,300,000 | 99,300,000 | 99,300,000 | 99,300,000 | 99,300,000 | 99,300,000 | 347,550,000 |
|        | 201동<br>5호       |         | 3     | 1   | 307,687,692 | 523,920,280 | 52,392,028 | 884,000,000 | 10,000,000 | 34,2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309,400,000 |
|        |                  |         | 4~5   | 2   | 318,129,582 | 541,700,380 | 54,170,038 | 914,000,000 | 10,000,000 | 35,700,000 | 91,400,000 | 91,400,000 | 91,400,000 | 91,400,000 | 91,400,000 | 91,400,000 | 319,900,000 |
|        |                  |         | 6~9   | 4   | 328,223,409 | 558,887,810 | 55,888,781 | 943,000,000 | 10,000,000 | 37,150,000 | 94,300,000 | 94,300,000 | 94,300,000 | 94,300,000 | 94,300,000 | 94,300,000 | 330,050,000 |

|        |            |       |    |             |             |            |               |            |            |             |             |             |             |             |             |
|--------|------------|-------|----|-------------|-------------|------------|---------------|------------|------------|-------------|-------------|-------------|-------------|-------------|-------------|
| 1140A2 |            | 10~16 | 7  | 338,665,299 | 576,667,910 | 57,666,791 | 973,000,000   | 10,000,000 | 38,650,000 | 97,300,000  | 97,300,000  | 97,300,000  | 97,300,000  | 97,300,000  | 340,550,000 |
|        |            | 17    | 1  | 337,621,110 | 574,889,900 | 57,488,990 | 970,000,000   | 10,000,000 | 38,500,000 | 97,000,000  | 97,000,000  | 97,000,000  | 97,000,000  | 97,000,000  | 339,500,000 |
|        |            | 33~39 | 7  | 362,333,583 | 616,969,470 | 61,696,947 | 1,041,000,000 | 10,000,000 | 42,050,000 | 104,100,000 | 104,100,000 | 104,100,000 | 104,100,000 | 104,100,000 | 364,350,000 |
|        |            | 40~49 | 10 | 382,869,300 | 651,937,000 | 65,193,700 | 1,100,000,000 | 10,000,000 | 45,000,000 | 110,000,000 | 110,000,000 | 110,000,000 | 110,000,000 | 110,000,000 | 385,000,000 |
| 1140A2 | 201동<br>2호 | 18    | 1  | 297,593,865 | 506,732,850 | 50,673,285 | 855,000,000   | 10,000,000 | 32,75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299,250,000 |
|        |            | 19    | 1  | 291,676,794 | 496,657,460 | 49,665,746 | 838,000,000   | 10,000,000 | 31,900,000 | 83,800,000  | 83,800,000  | 83,800,000  | 83,800,000  | 83,800,000  | 293,300,000 |
|        |            | 21    | 1  | 300,030,306 | 510,881,540 | 51,088,154 | 862,000,000   | 10,000,000 | 33,100,000 | 86,200,000  | 86,200,000  | 86,200,000  | 86,200,000  | 86,200,000  | 301,700,000 |
|        |            | 22    | 1  | 303,510,936 | 516,808,240 | 51,680,824 | 872,000,000   | 10,000,000 | 33,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            | 23    | 1  | 308,383,818 | 525,105,620 | 52,510,562 | 886,000,000   | 10,000,000 | 34,3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88,600,000  | 310,100,000 |
|        |            | 24~29 | 6  | 302,466,747 | 515,030,230 | 51,503,023 | 869,000,000   | 10,000,000 | 33,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            | 30    | 1  | 314,300,889 | 535,181,010 | 53,518,101 | 903,000,000   | 10,000,000 | 35,15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316,050,000 |
|        |            | 31    | 1  | 317,433,456 | 540,515,040 | 54,051,504 | 912,000,000   | 10,000,000 | 35,6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319,200,000 |
|        |            | 32    | 1  | 320,566,023 | 545,849,070 | 54,584,907 | 921,000,000   | 10,000,000 | 36,050,000 | 92,100,000  | 92,100,000  | 92,100,000  | 92,100,000  | 92,100,000  | 322,350,000 |
|        |            | 18    | 1  | 329,963,724 | 561,851,160 | 56,185,116 | 948,000,000   | 10,000,000 | 37,400,000 | 94,800,000  | 94,800,000  | 94,800,000  | 94,800,000  | 94,800,000  | 331,800,000 |
| 1140A2 | 201동<br>5호 | 19    | 1  | 323,350,527 | 550,590,430 | 55,059,043 | 929,000,000   | 10,000,000 | 36,450,000 | 92,900,000  | 92,900,000  | 92,900,000  | 92,900,000  | 92,900,000  | 325,150,000 |
|        |            | 21    | 1  | 332,400,165 | 565,999,850 | 56,599,985 | 955,000,000   | 10,000,000 | 37,75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334,250,000 |
|        |            | 22    | 1  | 336,576,921 | 573,111,890 | 57,311,189 | 967,000,000   | 10,000,000 | 38,350,000 | 96,700,000  | 96,700,000  | 96,700,000  | 96,700,000  | 96,700,000  | 338,450,000 |
|        |            | 23    | 1  | 341,797,866 | 582,001,940 | 58,200,194 | 982,000,000   | 10,000,000 | 39,100,000 | 98,200,000  | 98,200,000  | 98,200,000  | 98,200,000  | 98,200,000  | 343,700,000 |
|        |            | 24~29 | 6  | 335,184,669 | 570,741,210 | 57,074,121 | 963,000,000   | 10,000,000 | 38,150,000 | 96,300,000  | 96,300,000  | 96,300,000  | 96,300,000  | 96,300,000  | 337,050,000 |
|        |            | 30    | 1  | 348,063,000 | 592,670,000 | 59,267,000 | 1,000,000,000 | 10,000,000 | 4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350,000,000 |
|        |            | 31    | 1  | 351,891,693 | 599,189,370 | 59,918,937 | 1,011,000,000 | 10,000,000 | 40,550,000 | 101,100,000 | 101,100,000 | 101,100,000 | 101,100,000 | 101,100,000 | 353,850,000 |
|        |            | 32    | 1  | 355,372,323 | 605,116,070 | 60,511,607 | 1,021,000,000 | 10,000,000 | 41,050,000 | 102,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102,100,000 | 357,350,000 |
| 1150A1 | 201동<br>1호 | 3     | 1  | 293,417,109 | 499,620,810 | 49,962,081 | 843,000,000   | 10,000,000 | 32,150,000 | 84,300,000  | 84,300,000  | 84,300,000  | 84,300,000  | 84,300,000  | 295,050,000 |
|        |            | 4~5   | 2  | 303,162,873 | 516,215,570 | 51,621,557 | 871,000,000   | 10,000,000 | 33,55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304,850,000 |
|        |            | 6     | 1  | 312,908,637 | 532,810,330 | 53,281,033 | 899,000,000   | 10,000,000 | 34,95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314,650,000 |
|        |            | 7     | 1  | 311,168,322 | 529,846,980 | 52,984,698 | 894,000,000   | 10,000,000 | 34,7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89,400,000  | 312,900,000 |
|        |            | 8     | 1  | 310,472,196 | 528,661,640 | 52,866,164 | 892,000,000   | 10,000,000 | 34,6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312,200,000 |
|        |            | 9     | 1  | 312,908,637 | 532,810,330 | 53,281,033 | 899,000,000   | 10,000,000 | 34,95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314,650,000 |
|        |            | 10    | 1  | 322,654,401 | 549,405,090 | 54,940,509 | 927,000,000   | 10,000,000 | 36,350,000 | 92,700,000  | 92,700,000  | 92,700,000  | 92,700,000  | 92,700,000  | 324,450,000 |
|        |            | 19    | 1  | 320,217,960 | 545,256,400 | 54,525,640 | 920,000,000   | 10,000,000 | 36,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92,000,000  | 322,000,000 |
|        |            | 29    | 1  | 332,400,165 | 565,999,850 | 56,599,985 | 955,000,000   | 10,000,000 | 37,75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334,250,000 |
|        |            | 30~39 | 10 | 345,626,559 | 588,521,310 | 58,852,131 | 993,000,000   | 10,000,000 | 39,650,000 | 99,300,000  | 99,300,000  | 99,300,000  | 99,300,000  | 99,300,000  | 347,550,000 |
| 1150A2 | 201동<br>1호 | 40~49 | 10 | 365,118,087 | 621,710,830 | 62,171,083 | 1,049,000,000 | 10,000,000 | 42,450,000 | 104,900,000 | 104,900,000 | 104,900,000 | 104,900,000 | 104,900,000 | 367,150,000 |
|        |            | 11    | 1  | 316,389,267 | 538,737,030 | 53,873,703 | 909,000,000   | 10,000,000 | 35,45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318,150,000 |
|        |            | 12    | 1  | 312,212,511 | 531,624,990 | 53,162,499 | 897,000,000   | 10,000,000 | 34,85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313,950,000 |

|        |            |       |    |             |             |            |               |            |            |             |             |             |             |             |             |
|--------|------------|-------|----|-------------|-------------|------------|---------------|------------|------------|-------------|-------------|-------------|-------------|-------------|-------------|
| 1180A1 | 201동<br>3호 | 13~14 | 2  | 307,687,692 | 523,920,280 | 52,392,028 | 884,000,000   | 10,000,000 | 34,2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88,400,000  | 309,400,000 |
|        |            | 15    | 1  | 308,035,755 | 524,512,950 | 52,451,295 | 885,000,000   | 10,000,000 | 34,25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309,750,000 |
|        |            | 16    | 1  | 309,079,944 | 526,290,960 | 52,629,096 | 888,000,000   | 10,000,000 | 34,4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310,800,000 |
|        |            | 17    | 1  | 310,124,133 | 528,068,970 | 52,806,897 | 891,000,000   | 10,000,000 | 34,55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311,850,000 |
|        |            | 18    | 1  | 316,389,267 | 538,737,030 | 53,873,703 | 909,000,000   | 10,000,000 | 35,45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90,900,000  | 318,150,000 |
|        |            | 21    | 1  | 316,737,330 | 539,329,700 | 53,932,970 | 910,000,000   | 10,000,000 | 35,5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318,500,000 |
|        |            | 22    | 1  | 317,433,456 | 540,515,040 | 54,051,504 | 912,000,000   | 10,000,000 | 35,6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319,200,000 |
|        |            | 23    | 1  | 321,610,212 | 547,627,080 | 54,762,708 | 924,000,000   | 10,000,000 | 36,2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323,400,000 |
|        |            | 24~26 | 3  | 319,521,834 | 544,071,060 | 54,407,106 | 918,000,000   | 10,000,000 | 35,9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91,800,000  | 321,300,000 |
|        |            | 27    | 1  | 322,654,401 | 549,405,090 | 54,940,509 | 927,000,000   | 10,000,000 | 36,350,000 | 92,700,000  | 92,700,000  | 92,700,000  | 92,700,000  | 92,700,000  | 324,450,000 |
|        |            | 28    | 1  | 325,786,968 | 554,739,120 | 55,473,912 | 936,000,000   | 10,000,000 | 36,800,000 | 93,600,000  | 93,600,000  | 93,600,000  | 93,600,000  | 93,600,000  | 327,600,000 |
|        |            | 3     | 1  | 267,660,447 | 455,763,230 | 45,576,323 | 769,000,000   | 10,000,000 | 28,45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269,150,000 |
|        |            | 4~5   | 2  | 276,710,085 | 471,172,650 | 47,117,265 | 795,000,000   | 10,000,000 | 29,75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278,250,000 |
|        |            | 6~9   | 4  | 285,411,660 | 485,989,400 | 48,598,940 | 820,000,000   | 10,000,000 | 31,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287,000,000 |
|        |            | 10~11 | 2  | 294,461,298 | 501,398,820 | 50,139,882 | 846,000,000   | 10,000,000 | 32,3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84,600,000  | 296,100,000 |
|        |            | 19    | 1  | 292,024,857 | 497,250,130 | 49,725,013 | 839,000,000   | 10,000,000 | 31,950,000 | 83,900,000  | 83,900,000  | 83,900,000  | 83,900,000  | 83,900,000  | 293,650,000 |
|        |            | 21~22 | 2  | 301,074,495 | 512,659,550 | 51,265,955 | 865,000,000   | 10,000,000 | 33,25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302,750,000 |
|        |            | 23    | 1  | 302,466,747 | 515,030,230 | 51,503,023 | 869,000,000   | 10,000,000 | 33,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            | 24    | 1  | 301,422,558 | 513,252,220 | 51,325,222 | 866,000,000   | 10,000,000 | 33,3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303,100,000 |
|        |            | 25~28 | 4  | 301,074,495 | 512,659,550 | 51,265,955 | 865,000,000   | 10,000,000 | 33,25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302,750,000 |
|        |            | 29    | 1  | 302,466,747 | 515,030,230 | 51,503,023 | 869,000,000   | 10,000,000 | 33,45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86,900,000  | 304,150,000 |
|        |            | 30~39 | 10 | 315,345,078 | 536,959,020 | 53,695,902 | 906,000,000   | 10,000,000 | 35,300,000 | 90,600,000  | 90,600,000  | 90,600,000  | 90,600,000  | 90,600,000  | 317,100,000 |
|        |            | 40~49 | 10 | 333,096,291 | 567,185,190 | 56,718,519 | 957,000,000   | 10,000,000 | 37,850,000 | 95,700,000  | 95,700,000  | 95,700,000  | 95,700,000  | 95,700,000  | 334,950,000 |
|        | 201동<br>4호 | 3     | 1  | 281,582,967 | 479,470,030 | 47,947,003 | 809,000,000   | 10,000,000 | 30,45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80,900,000  | 283,150,000 |
|        |            | 4~5   | 2  | 290,980,668 | 495,472,120 | 49,547,212 | 836,000,000   | 10,000,000 | 31,800,000 | 83,600,000  | 83,600,000  | 83,600,000  | 83,600,000  | 83,600,000  | 292,600,000 |
|        |            | 6~9   | 4  | 300,378,369 | 511,474,210 | 51,147,421 | 863,000,000   | 10,000,000 | 33,15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302,050,000 |
|        |            | 10~11 | 2  | 309,776,070 | 527,476,300 | 52,747,630 | 890,000,000   | 10,000,000 | 34,5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89,000,000  | 311,500,000 |
|        |            | 19    | 1  | 307,339,629 | 523,327,610 | 52,332,761 | 883,000,000   | 10,000,000 | 34,15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88,300,000  | 309,050,000 |
|        |            | 21~22 | 2  | 316,737,330 | 539,329,700 | 53,932,970 | 910,000,000   | 10,000,000 | 35,5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318,500,000 |
|        |            | 23    | 1  | 318,477,645 | 542,293,050 | 54,229,305 | 915,000,000   | 10,000,000 | 35,750,000 | 91,500,000  | 91,500,000  | 91,500,000  | 91,500,000  | 91,500,000  | 320,250,000 |
|        |            | 24    | 1  | 317,433,456 | 540,515,040 | 54,051,504 | 912,000,000   | 10,000,000 | 35,6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91,200,000  | 319,200,000 |
|        |            | 25~28 | 4  | 316,737,330 | 539,329,700 | 53,932,970 | 910,000,000   | 10,000,000 | 35,5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318,500,000 |
|        |            | 29    | 1  | 318,477,645 | 542,293,050 | 54,229,305 | 915,000,000   | 10,000,000 | 35,750,000 | 91,500,000  | 91,500,000  | 91,500,000  | 91,500,000  | 91,500,000  | 320,250,000 |
|        |            | 30~39 | 10 | 331,704,039 | 564,814,510 | 56,481,451 | 953,000,000   | 10,000,000 | 37,650,000 | 95,300,000  | 95,300,000  | 95,300,000  | 95,300,000  | 95,300,000  | 333,550,000 |
|        |            | 40~49 | 10 | 350,499,441 | 596,818,690 | 59,681,869 | 1,007,000,000 | 10,000,000 | 40,350,000 | 100,700,000 | 100,700,000 | 100,700,000 | 100,700,000 | 100,700,000 | 352,450,000 |

|        |            |       |   |             |             |            |             |            |            |            |            |            |            |            |             |
|--------|------------|-------|---|-------------|-------------|------------|-------------|------------|------------|------------|------------|------------|------------|------------|-------------|
| 1180A2 | 201동<br>3호 | 12    | 1 | 285,759,723 | 486,582,070 | 48,658,207 | 821,000,000 | 10,000,000 | 31,05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82,100,000 | 287,350,000 |
|        |            | 13~17 | 5 | 282,975,219 | 481,840,710 | 48,184,071 | 813,000,000 | 10,000,000 | 30,650,000 | 81,300,000 | 81,300,000 | 81,300,000 | 81,300,000 | 81,300,000 | 284,550,000 |
|        |            | 18    | 1 | 285,063,597 | 485,396,730 | 48,539,673 | 819,000,000 | 10,000,000 | 30,950,000 | 81,900,000 | 81,900,000 | 81,900,000 | 81,900,000 | 81,900,000 | 286,650,000 |
|        | 201동<br>4호 | 12    | 1 | 300,726,432 | 512,066,880 | 51,206,688 | 864,000,000 | 10,000,000 | 33,200,000 | 86,400,000 | 86,400,000 | 86,400,000 | 86,400,000 | 86,400,000 | 302,400,000 |
|        |            | 13~17 | 5 | 297,593,865 | 506,732,850 | 50,673,285 | 855,000,000 | 10,000,000 | 32,75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85,500,000 | 299,250,000 |
|        |            | 18    | 1 | 300,030,306 | 510,881,540 | 51,088,154 | 862,000,000 | 10,000,000 | 33,100,000 | 86,200,000 | 86,200,000 | 86,200,000 | 86,200,000 | 86,200,000 | 301,700,000 |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탑입,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실별로 계약면적에 포함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실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자의 경우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균린생활시설, 보행공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동별로 청약 신청은 불가하며, 탑입별 청약 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 발표 시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부산광역시, 부산동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051-747-6333)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2

###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5.02.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당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시 별도의 청약예치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
| 일 시 | 2025년 02월 19일(수)<br>(09:00 ~ 17:00) | 추첨 : 2025년 02월 20일(목) (10:00)<br>당첨자 발표 : 2025년 02월 20일(목) (11:00) | 2025년 02월 21일(금)<br>(10:00~16:30) |   |
| 장 소 |                                     |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br>(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 및 당첨자를 추첨함.</li> <li>- 당첨자 확인은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li> </ul> |

#### ■ 견본주택 청약신청 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사항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서(견본주택에 비치)</li> <li>•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li> <li>•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li> <li>• 인감도장</li> </ul>   |
| 제3자<br>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에 비치)</li> </ul> |
| 법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서(견본주택에 비치)</li> <li>•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li> <li>• 사업자등록증 1부</li> <li>•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li> </ul> <p>※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p>                                 |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호수 발생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합니다.

####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일시 : 2025년 02월 20일(목) [10:00](추첨), [11:00](당첨자 발표)
- 추첨 :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 현장추첨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체결 시간     | 장 소                                   | 계약금 납부            |
|------------------|-------------|---------------------------------------|-------------------|
| 2025년 02월 21일(금) | 10:00~16:30 |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br>(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구 분               | 금융기관 | 계약번호             | 예금주      | 비고   |
|-------------------|------|------------------|----------|--|
| 1차 계약금            | 신한은행 | 140-014-506663   | 코리아신탁(주) |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A동 1001호" 당첨자 흥길동" →<br>A-1001흥길동) |
| 2차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신한은행 | 동호별 생성(공급계약서 명시) | 코리아신탁(주) |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2차 계약금은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나, 연체료는 적용되며 공급계약서의 조항을 따르기로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잔금은 [신한은행, 계좌번호 140-014-506663, 예금주 코리아신탁(주)]으로 집금됩니다.

## ■ 계약 시 구비 서류

| 구 분    |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공통기본서류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br/>※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b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li> <li>-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li> <li>-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li> <li>-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li> <li>-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li> </ul> </li> </ul> |

|  |                      |      |   |
|--|----------------------|------|---|
|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본인발급용)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
| 법인 계약 시                                    | 대표이사 신분증             |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   |
| 제3자 대리인<br>제출 시 추가사항<br>※ 본인 이외는<br>모두 제3자 | 위임장                  | 청약자  |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계약자 본인 발급용)  |
|  | 대리인신분증, 인장           |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2025.02.14)**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 분양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변 인접부지의 현황 및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현황 및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동·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인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 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위약금이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름)

|      |  |                 |                 |                |                |         |
|------|--|-----------------|-----------------|----------------|----------------|---------|
| 대상증서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br>※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                 |                 |                |                |         |
| 납부기한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                 |                 |                |                |         |
| 납부방법 |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a href="http://www.e-revenuestamp.or.kr">www.e-revenuestamp.or.kr</a> )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br>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                 |                |                |         |
| 납부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시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 및 연체료 적용은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준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 및 보상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 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적용 불가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법인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4      플러스 옵션 품목(무상제공 및 설치)

- 본 오피스텔의 플러스 옵션 품목은 전체 무상으로 제공 및 설치됨에 따라 미설치 및 개별 품목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 플러스 옵션 품목 내용

#### 1) 라이프업 스타일링

##### 현관중문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현관중문     | 전 타입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품목은 무상제공 및 설치됨에 따라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바닥 마감재 특화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바닥 마감재 특화 | 전 타입      | <p>[주방/실1 바닥]<br/>유럽산 타일</p> <p>[실2/3/4 바닥]<br/>광폭 강마루(섬유판)</p> |

- 무상제공되는 바닥 마감재 특화품목은 견본주택에 시공된 디자인으로 시공되며,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며, 타일의 나누기 및 각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광폭 강마루(섬유판)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특화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조명특화 | 전 타입      | <p>[설1/2]<br/>디밍.색온도기능 다운라이트</p> <p>[설3/4]<br/>디밍.색온도기능 엣지간접등</p> <p>[설1/2/3/4]<br/>커튼박스 간접조명</p> <p>[설1]<br/>전동커튼레일</p> |

- 조명특화 품목은 타입별로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품목이 무상제공 및 설치됨으로 인해 실 1/2/3/4 조명기구 하부면 디밍과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UI가 제공됩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로 전동커튼레일의 설치위치가 상이하여 전선 타공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원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 라이프업 수납

 현관 수납 특화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현관 수납 특화 | 84 OA1/OA2  | <p>[신발장]<br/>신발 살균기+디자인선반(조명포함)</p> |
|          | 114 OA1/OA2 | <p>[신발장]<br/>신발 살균기+디자인선반(조명포함)</p> |
|          | 115 OA1/OA2 | <p>[현관창고]<br/>풀딩도어+시스템선반 특화</p>     |
|          | 118 OA1/OA2 |                                     |

- 현관 수납특화 품목은 타입별로 현관 창고도어 사이즈 및 위치가 일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도 수납 특화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복도 수납 특화 | 115 OA1/OA2 | <p>[복도 팬트리]<br/>풀딩 도어+시스템선반 특화</p> |

- 복도 수납 특화에 설치되는 시스템선반 특화는 현관 수납 특화의 시스템선반 특화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설치됩니다.

드레스룸 특화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드레스룸 특화 | 전 타입      | AL포켓슬라이딩도어+붙박이장+천장형 제습기 |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는 AL포켓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 설치되는 AL포켓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 설치되는 AL포켓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으로 한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 설치되는 AL포켓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 설치되는 AL포켓슬라이딩도어는 레일과 하단 마감캡 상세 및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포켓집 내 비마감면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의 붙박이장 가구 구성 및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는 가구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는 천장형 제습기는 포함되며, 코스텔(CDD-600B)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 포함되는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컨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에 포함되는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품목의 AL포켓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붙박이장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붙박이장 | 114 OA1/OA2 | [실3/4]<br>매립형 붙박이장(풀딩도어) |
|      | 115 OA1/OA2 |                          |
|      | 84 OA1/OA2  | [실3]<br>붙박이장(풀딩도어)       |
|      | 118 OA1/OA2 |                          |
|      | 84 OA1/OA2  | [실4]<br>붙박이장(풀딩도어)       |
|      | 118 OA1/OA2 |                          |

- 114OA 1/2, 118OA 1/2 타입은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어 매립형 붙박이장 및 붙박이장(풀딩도어) 사용 시 일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크기 및 레이아웃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CG 등 안내자료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라이프업 키친

 주방 스타일링 특화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주방 스타일링 특화 | 전 타입      | [벽/상판] 세라믹타일<br>[본주방] 상부플랩장+하부조명+장식장<br>[후드] 국산 아일랜드형<br>[싱크수전] 외산 |

- 본공사 시 벽/상판 세라믹타일의 나누기 및 패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품목에 설치되는 장식장의 위치 및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품목의 렌지후드는 아일랜드형(하츠, IDS-30S)으로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에는 소방법규에 따른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설치되며, 렌지후드에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의 조작을 위한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방 가전류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 타입        | 내용    |   |
| 주방 가전류 | 전 타입      | 냉장고   |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br>:4도어 냉동/냉장고(RF60C93T2AP), 3도어 김치냉장고(RQ33C74E1AP) |
|        |           | 전기쿡탑  | 삼성전자(인덕션3구)<br>(NZ63B5056AK)  |
|        |           | 전기오븐  | 삼성전자<br>(NQ50T8539BK)   |
|        |           |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br>(DW60BB837UAP)  |

- 당 오피스텔에는 전타입 인덕션 방식의 전기쿡탑이 설치되며, 전기쿡탑 사용시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전기쿡탑은 각 화구별 최대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등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기구 사용을 위한 가스배관 등의 설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와 식기세척기의 전면 마감은 새틴 베이지(글래스) 패널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배치순서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미러형 타입 등 평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라이프업 바스

욕실 특화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 타입        | 내용   |  |
| 욕실 특화 | 전 타입      | [외산] 도기/수전<br>비데일체형양변기+세면대(벽부착일체형 또는 언더볼)+외산수전류(세면대, 욕조, 샤워) |  |

욕실 복합 환풍기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 타입        | 내용          |  |
| 욕실 복합 환풍기 | 전타입       | 욕실복합환풍기 2개소 |  |

- 욕실복합환풍기는 욕실1, 욕실2(2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힘펠(FHD3-C150P\_MT)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이 무상제공 및 설치됨에 따라 일반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시스템 에어컨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시스템에어컨 | 84 OA1/OA2  | [설1/2/3/4]<br>실내기 4개소     |
|        | 114 OA1/OA2 | [주방, 설1/2/3/4]<br>실내기 5개소 |
|        | 115 OA1/OA2 |                           |
|        | 118 OA1/OA2 |                           |

-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 및 모델, 운전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일 타입의 호실에서도 천정 내 구조물 및 설비 등으로 인하여 실내기 설치 위치와 천장 내 냉매배관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실은 공용 복도에 설치되어 실외기실과 인접한 호실은 에어컨 운전에 따른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는 1세트의 실외기를 3개의 호실이 공유하여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각 총당 6개 호실, 실외기 2세트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접 호실의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발생 시 동일 실외기를 공유하는 호실의 냉방운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접호실과 실외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냉방운전 시기는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분배되어 부과되는 방식이며, 운영 방식에 따라 유지보수 및 기본 운전을 위한 공용비용이 발생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실외기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은 실외기를 공유하는 인접 호실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의 용량은 각 호실별 냉방부하 및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다른 제조사 또는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형, 스탠드형 에어컨 사용을 위한 매립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호실별 개별 실외기실은 설치되지 않으며, 개별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배관, 전원공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용 배수배관이 각 호실별 다용도실 내 노출 설치되어 다용도실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6) 시스템 청정환기

| 구 분         | 무상제공 및 설치 |              |
|-------------|-----------|--------------|
|             | 타입        | 내용           |
| 시스템<br>청정환기 | 전타입       | [설1/2]<br>2대 |

- 시스템청정환기는 타입별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의 무상제공 및 설치에 따라 일반 급기디퓨저를 대체하며, 해당실의 배기디퓨저의 위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조명기구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의 무상제공 및 설치에 따라 이중천장내 시스템 청정환기 관련 전기시설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운전시에는 시스템청정환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3, 실4에 설치된 디퓨져의 급기, 배기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무상제공 및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제공 및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0의 2항에 따라, 사용승인 약 45일 전 경 분양받은 자의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문자 및 우편으로 별도 통보합니다.(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8년 11월 예정(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자연재해,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등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 “시공사”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일반<br>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업장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분양사업장,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오피스텔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오피스텔 분양광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li> <li>하자판정 기준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li> <li>일부 실은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본 건축물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증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li> <li>입주 후 계약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li> <li>지정일(계약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li> <li>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본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약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계약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타 시설(공동주택, 균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의 형태(평면, 입면 등)의 변경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시설 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다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표현된 참고용 자료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색채디자인 등은 외부 조명 및 적용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 보이는 착시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실 평면도는 주동 동호별 라인에 따라 외부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어 이는 배제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실 시공시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거실과 침실의 벽체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외벽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일부 실의 경우 창호를 통한 조망 및 환기면적이 외장재로 간접될 수 있습니다. (외장재와 간접이 심한 실의 경우 창호 개폐구간 및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실 시공시 외벽에 장식물로 인해 창호가 가려지는 세대에 대해서는 창호 면적이 확장되어 일반세대와 상이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계약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에 따라 계약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공사 진행 중에는 각종 공정별 공사방법에 대해 적법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법변경 등은 시공사 고유권한임을 인지하고, 공법의 적정성 여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ul> |
| 인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li> <li>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li> <li>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br/>(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개별 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li> </ul>  |

|      |  |
|------|--|
|      | <p>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오피스텔의 명칭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오피스텔의 명칭에 사용된 시공사의 소유로서, 브랜드를 포함한 오피스텔의 명칭을 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li> <li>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출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공간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단위실 및 공용공간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인허가과정,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li> <li>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견본주택), 동별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타입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오피스텔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 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사전 분양 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등),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 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단위실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부지 및 시공 현황과 측량 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와 이미지 등은 예정 사항으로 해당 주관사 또는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의 개발 예정 부지를 포함한 주변 환경의 이미지와 영상은 계획·예정사항에 대한 표현·구현의 한계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소방법 및 성능위주설계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 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각 동별 1개소(복도)에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관 진입창호가 설치되며(지상3~17층), 이를 구분하기 위해 창호에 붉은색 역삼각형의 표식이 유리면에 부착됩니다. 표식은 계약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li> <li>소방관이 진입하는 공간(지상3~17층)은 평상시에는 출입 통제하여 관리동선으로만 사용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자성로~사업지 진출입부 완화차로는 준공 후 기부채납 예정입니다.</li> <li>단지 서측 자성로변에 별도의 교육연구시설(예정)이 위치하며, 시설은 부산시청(또는 부산 동구청)에 기부채납 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li> <li>단지 내에서 교육연구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교육연구시설은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건축심의 및 환경영향평가가 심의 의견에 따라 당 사업지 주변으로는 담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단지 내 공개공지는 단지 내부의 시설이나, 관계법령에 의거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훈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li> <li>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공동부담입니다.</li> <li>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계약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도시가스 정압기 설비는 건축물의 형태로 단지 내(범일로변)에 위치하며, 상세 설치 위치나 규모 등은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후 시공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악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부산도시가스와 협의 후 설치하는 도시가스 정압기 설비의 위치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정압기 설치 시,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 후 부산도시가스와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li> <li>본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전체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산입되지 않습니다.</li> </ul> |
| 주변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오피스텔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li> <li>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의 개발 예정 부지를 포함한 주변 환경의 이미지와 영상은 계획·예정사항에 대한 표현·구현의 한계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동의 위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오피스텔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준공시점에 주변 여건 고려 및 도로변 소음 측정 후 오피스텔동과 서측 인접대지 경계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도로에 면한 실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현장 여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본 사업장의 최초 분양광고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기반시설과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본 사업지와 접한 미55보급창(Busan Storage Center) 주변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임의로 훼손, 철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는 성남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생 중 남학생은 부산중학교 및 부산서중학교로, 여학생은 경남여자중학교로, 고등학생은 남부학교군으로 수용가능하나, 향후 학생 수 변화 추이와 본 지역의 주택개발과 인근 지역 개발경과 등의 배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치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학생 배정계획의 확정은 본 단지 인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시설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층별 차이 및 단위실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실은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일부 실은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계약자에게 인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육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육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li> <li>입주 후 주차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발생되는 다툼 등의 문제사항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각 단위실은 지상1층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동 출입구 등의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각 층의 엘리베이터 훌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주출입구 훌, 공용공간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및 공용공간의 점자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자자체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안에서 육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 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실은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와 외부도로와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li> <li>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실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공간, 휴게시설 등)</li> <li>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답라이트, D/A)이 설치되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재활용보관시설, 재활용 창고, 수목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실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내 수목식재 등으로 인해 저층부 실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에 설치된 오피스텔 공용공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육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실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ul> |

- 재활용폐기물보관소는 지하1층에 위치하며, 설치 위치는 인허가 진행 시 결정된 사항으로, 인접한 실에서는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용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상1층에 1개소 설치되며, 인근 실은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단위실 내에서 장비를 통해 투입 및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지상1층에 옥외투입구 및 RFID감량기(환경영향평가 심의 조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상1층에 설치하는 배출판넬로 수거차량을 통해 해당 지자체 수거일에 배출될 예정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판넬이 201동 지상1층에 설치되며, 타용도(공동주택 3개동)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판넬도 102동 지상1층에 통합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 위치는 추후 실시공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1동, 102동 사이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의 조경부분(지상3층 및 옥탑)은 관리상의 용무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상2층의 옥상(지상3층의 외부바닥)의 단위실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단위실을 통한 이동을 개방하여야 합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흠크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단위실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층 단위실 옥상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단위실은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오피스텔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파뢰침 등)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층 및 외부 난간은 건축법 등의 관련 법규 높이 기준에 따라 투시형 철재난간 또는 유리난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계약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균접한 실은 승강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인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인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실은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품질 및 유지관리 성능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전이층 부분의 구조 설계의 경우 개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상20층에는 피난안전구역과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용 자전거보관대는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 돌출물(DA)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야간조명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계약자 부담입니다.
- 허가도면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도로선형, 주정차 가능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민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존은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 단위실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수목 및 시설물의 위치, 포장 범위,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선형,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출입구,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계획된 오피스텔 공용공간 및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보행로 설치로 인해 단위실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휜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li> <li>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조경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종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문주,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 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배수층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위실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
| 입면·색채<br>·창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탑, 지붕,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실의 벽체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 구조물은 향후 인허가 기관의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옥상 장식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건축·경관심의에 결정에 따라 외장 마감은 도장, 커튼월류 및 판넬(무기질) 등으로 구성되며, 외장재가 일부 호실의 창호와 간접되어 시야 및 조망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단지 모형에서 해당 호수의 간접정도를 필히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의 외장재가 창호와 간접이 심한 일부 단위실의 창호는 크기 또는 개폐방향이 바뀔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창호와 간접이 경미한 단위실 계약자 분들은 개폐방향 또는 크기, 형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외장재 간접으로 인해 창호 사이즈가 변경(확장)된 호실의 타입명 OA2는 그렇지 않은 호실의 타입명인 OA1과 구분되니, 이를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두 타입은 창호의 사이즈 및 개폐방향 외에 면적 및 다른 설계, 시공내용은 동일합니다.)</li> <li>오피스텔의 모든 단위실에는 건축법시행령51조에 의거하여 배연설비인 배연창이 1개소씩 설치됩니다. 이를 작동하기 위한 모듈(개폐장치)이 창틀에 노출되며, 창호프레임에 브라켓 설치 및 설치를 위한 타공이 발생할 수 있고 미관저해, 창호개폐 및 환기가 불가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연창(개폐장치 포함)의 색상 또는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관련법규에 따라 배연창(개폐장치 포함)은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파손 등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인허가사항에 적합하게 복구해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외장재 간접으로 인해 배연창의 개폐방향은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보를 위해 1180A1 및 1180A2 타입 9층~49층 호실의 실1의 주방 맞은편 창호와 실2의 화장실 맞은편 창호, 1140A1 및 1140A2 타입 8층~49층 호실의 실3, 실4의 2개 창호에는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될 예정이며, 커튼박스 아래로 일부 장치가 노출되어 가구 사용 등에 일부 간접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공용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피스텔의 공용공간(커뮤니티 시설)은 지상2층에 위치합니다.</li> <li>공용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공용공간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리단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됩니다.</li> <li>각종 홍보물 상의 공용공간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인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의 일부 공간에 균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있으며, 점검을 위해 개방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공용공간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용공간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집합건출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로부터 관리단 구성 후 새로운 건물관리주체를 선정할 때까지 공용공간(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는 개별호실에 부과됩니다.</li> <li>각종 홍보물 상의 공용공간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인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 내·외부 디자인과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공간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과 오피스텔의 공용공간(프라이빗 골프클럽)은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법(공동운영 또는 별도 운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 후, 각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침,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및 합의 과정을 거쳐 공동주택의 입주자,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실 내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각 호실이 공유하며, 각 층별 복도에 배치되어 인근 호실은 소음과 진동이 전달될 수 있고 호실별 사용량은 전력분배 시스템에 의해 분배됩니다.</li> <li>지하층에 설치된 전기/발전기실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면적은 시설면적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li> <li>지상층에 설치된 방재실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면적은 시설면적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li> <li>지상층에 설치된 MDF실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면적은 시설면적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li> <li>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계약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li> <li>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인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실은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li> <li>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제연 хр能力强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단위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실,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li> <li>공용부에 통신사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상층에 환기구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실의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li> <li>계약자 공동시설, 저수조, 빗물처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안내자료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내)</li> <li>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지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본 건물의 복도 천장고는 시공 시 일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지하층) 및 공기청정기(동출입구)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동 출입구 근처, 필로티 내, 주동 주변으로 제연 хр能力强 Dry Area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내 가스정압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층 단위실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시수 공급을 위한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기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한국전력 소유의 전기설비,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 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실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가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헬리포트가 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실은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중계장치 - 1.지하4층: EPS/TPS(3개소) 2.지하1층: EPS/TPS(3개소) 3.[101동]EPS/TPS: 4층, 11층, 18층, 25층, 32층, 39층, 46층, 52층, 58층 4.[102동]EPS/TPS: 4층, 11층, 18층, 25층, 32층, 39층, 46층, 53층, 60층, 66층 5.[103동]EPS/TPS: 4층, 11층, 18층, 25층, 32층, 39층, 46층 6.[201동]구내통신실: 7층, 20층(TPS), 31층, 43층 7.[교육연구시설]EPS/TPS: 1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호실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 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li> <li>무인택배시스템과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타 용도와 공용으로 사용하며, 지하주차장에서 용도별 영역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됩니다.</li> <li>지하주차장으로의 진입은 자성로변과 범일로변에서 가능하며, 출입은 자성로로 가능합니다.</li> <li>오피스텔은 지하1층에서 지하3층의 주차장을 사용하며, 주차대수 472대(경형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 되어있습니다.</li> <li>지하4,5층까지 연결되는 계단과 비상용, 피난용승강기는 피난용으로 인해 설치된 것으로, 해당층은 오피스텔 계약자의 주차장 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지하1층의 주차는 공동주택과 균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과 영역을 나누어 사용하며, 지하2~3층은 공동주택과 영역을 나눠 사용합니다.</li> <li>지하1층의 주차는 공동주택과 차단기로 인해 영역 구분되어있으나, 그 외 균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li> <li>확장형 주차비율 및 경형 주차비율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li> <li>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전기차 충전시설 기기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은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및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차구획 3대씩 벽체구획 되어있어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전기차 주차구역의 벽체구획은 준공시점 소방청 지침에 따라 적용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동의 전·후 층벽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및 옥상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주차구역은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 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엘리베이터 훌,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주차장의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경우 법규기준 6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이상,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 지하1층 택배차량의 이동 동선에 해당하는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량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 및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li> <li>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단위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실은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팬, D/A)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실은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지하층에 제연실(제연헬름)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실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li> <li>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별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li> </ul> |
| 근린 생활시설 및 교육 연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단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li> <li>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비주거 부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은 차후 근린생활시설 분양 전, 일부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오피스텔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 동의 없이 개선 진행될 수 있습니다.</li> <li>교육연구시설을 기부채납 예정으로 기부채납 받는 부산시청(또는 부산 동구청)의 요구에 의해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오피스텔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 동의 없이 개선 진행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1층 비주거(근생, 교육연구, 오피스텔)의 주차구획은 차량 동선상 용도별 영역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교육연구시설은 해당 동 하부에 별도의 색상으로 바닥과 벽체에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li> <li>교육연구시설용 쓰레기보관소는 지상1층 102동에 설치되어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보관소는 지상1층 102동과 103동에 설치되어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악취 발생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

## ■ 단위호실

| 구분 | 내 용   |
|----|---|
| 평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각 실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오피스텔의 특성상 향후 층간/실 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li> <li>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습니다.</li> <li>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동일한 타입이더라도 실별로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실별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실내부 실시공 시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위실 내부 일부 비내력벽 (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은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 변경될 수 있으며,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실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계약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입주 후 과다한 습도 유지와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샤워기 및 담수 사용 시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담수의 화분)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사용시 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li> <li>오피스텔 단위실 기본 천장고는 2.6m(거실, 침실 기준)이며, 현관, 복도, 주방 및 식당, 침실 일부 구간, 욕실,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은 상이합니다. 또한, 실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사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타사와 당 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공용공간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공용공간,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열재의 종류 및 성능은 법적기준 내에서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실내 가구(장롱, 불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 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 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li> <li>단위실 내 또는 공용부의 비내력 벽체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실별로 조적 또는 경량벽체,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각 실별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실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다용도실 / 욕실 / 현관 등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오피스텔 단위실 1180A1/2타입 실1 내부에 설치된 창호는 공동주택(102동) 인접세대와의 프라이버시 침해(시야간섭)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 조건(건축심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입주 이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철거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오피스텔 단위실 1150A1/2타입 실2 창호(W:1.2m)에 적용한 불투명필름은 인접호실과의 프라이버시 침해(시야간섭)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 조건(사업계획승인)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입주 이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거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ul> |
| 창호 및 다용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피스텔의 모든 호실은 배연창이 1개소씩 설치됩니다. 배연창은 한쪽으로만 개폐 가능하고 창호 일부가 고정되는 등 기능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비단열구간 다용도실 외부 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 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다용도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li> <li>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비단열구간 다용도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다용도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다용도실 또는 보일러실에 가스 입상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다용도실 또는 보일러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단위실은 외부 디자인에 의한 창호 가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입면·색채·창호'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단위실 내 일부 다용도실의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구의 위치, 크기,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실의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며, 다용도실 천장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다용도실(1140A1/2, 1150A1/2), 세탁실(840A1/2), 욕실(1180A1/2)은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 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li> <li>다용도실 또는 보일러실에 환기장치(전열교환기)의 설치로 다소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화재 시 하부 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 시 하부층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실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피난구 케이스는 철재재질로 별도 마감이 없으며, 바닥 레벨에서 일부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피난구는 홀수층 짹수층의 위치가 다르게 설치되며 위층의 피난구가 아래층 천장에 노출되는 구조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장소에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li> <li>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li> <li>하향식 피난구 개폐시 경보음이 울리며, 각 실로의 임의출입이 불가능합니다.</li> <li>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지상3층 단위실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지상3층 단위실은 하향식 피난구 옆 가까운 창호를 통해 외부 옥상에 설치한 완강기를 사용하여 하부 층으로 피난 가능합니다.</li> <li>일부 다용도실 외벽면으로 단열재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단열재가 설치되는 벽면 및 천장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구간에는 마감 설치 방식에 따라 접합부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본 공사시 외부 난간 형태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자료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 사업의 조건상 단위실 외부 창호는 풍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특수구조 PVC창호로 일반 PVC창호에 비해 프레임 등의 두께가 두꺼워 상대적으로 유리 면적이 좁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현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용부 창호의 크기는 개방감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시스템에어컨용 배수배관이 각 호실별 다용도실 내 노출 설치되어 다용도실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
| 옥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 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li> <li>옥실 1/2에는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옥실 내 샤워부스 및 옥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옥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옥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옥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부 옥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옥실의 단자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옥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본 공사 시 단위실 내 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옥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カリ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옥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계약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li> <li>본 공사 시 옥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옥실장, 샤워부스 등 옥실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옥실 하부장의 가구 뒷판은 배관설치로 인해 뒷판이 미시공되거나 타공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림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ul>  |
| 가구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실 마감재 기준은 타입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단위실 내부 가구(각종 일반가구, 주방가구, 옥실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바닥, 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li> <li>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옥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본 공사시 각 실, 옥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자료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공사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기,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등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방가구 및 주방가구에 포함된 하드웨어, 악세사리는 본 공사 시 등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어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으며, 선반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각 타입별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 및 색상, 크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수납가구 및 시스템선반의 배치는 좌우 호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안목치수에 따라 일부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텀핑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li> <li>강마루(섬유판)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인조석 및 타일(현관 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비누탁, 주방 상판, 재료분리대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단위실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되며, 제품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천장 물딩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li> <li>목창호, 시트판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r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판넬 나누기 및 치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현관 방화문 및 실 내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문짝/프레임/손잡이/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사양,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타일 시공 부위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타일 줄눈나이는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층 층간소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현관바닥 및 욕실벽체, 바닥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마감재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b>추가</b>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창호사양 및 규격, 프레임/손잡이/레일/레일집 등 하드웨어 사양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현관창고, 팬트리 등에 설치되는 풀딩도어는 기능성 도어가 아니므로 차음, 차폐, 차광 기능이 없습니다.</li> <li>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본 공사시 포켓도어의 프레임, 손잡이, 하드웨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천장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 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시트판넬 마감부,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li> <li>단위실 내 벽지 외 두께가 있는 마감재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ul> |
| 전기기계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단위실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주방의 식탁위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적정위치로 설계 및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된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단위실 내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등의 전기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복도 및 단위실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li> <li>단위실 내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단위실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단위실에만 설치됩니다.)</li> <li>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실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등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입주 후 단위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입주 후 단위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li> <li>견본주택 단위실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ul>   |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등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단위실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접에 의하여 단위실 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실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실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용 설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주방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용 투입구가 설치되며,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의 사용 빈도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전 호실 인덕션 방식의 전기쿡탑이 설치되며, 전기쿡탑 사용 시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리 용기에 인덕션용 표시가 있더라도 도자기질 재질 또는 자성이 약한 용기의 경우 조리가 되지 않거나 전기쿡탑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가스배관은 가스보일러 사용을 위한 용도로만 설치되며, 가스쿡탑 사용을 고려한 가스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스쿡탑 사용 시에는 가스계량기에서 가스쿡탑까지 연결되는 가스배관 공사를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렌지후드 상부에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 840A1/2 -실내기 4대, 1140A1/2,1150A1/2,1180A1/2 - 실내기5대)되며, 개별 에어컨 설치를 위한 매립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는 1세트의 실외기를 3개의 호실이 공유하여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각 층당 6개 호실, 실외기 2세트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접 호실의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발생 시 동일 실외기를 공유하는 호실의 냉방운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접호실과 실외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냉방운전 시기는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분배되어 부과되는 방식이며, 운영 방식에 따라 유지보수 및 기본 운전을 위한 공용비용이 발생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실외기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은 실외기를 공유하는 인접 호실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비단열구간 다용도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 단위실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비단열구간 다용도실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단위실(오피스텔 최하층~최하층+3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은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위실 내,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단위실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입상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돋기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 실사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위실 내 통신단자함, 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환기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과 급수급탕분배기가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층 욕실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 일부 싱크대하부 공간 등은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하층 단위실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급수급탕분배기의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분배기, 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타입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드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은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타입의 단위실은 보일러가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등 열린 부위가 없도록 계약자께서 반드시 담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앱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앱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앱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여,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제어는 단위실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 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계약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사업주체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 시, 안드로이드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 빅스비 사용 환경은 삼성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맥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단위실 내의 각종 홈넷 기기의 제어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앱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 구분   | 내 용   |
|------|---|
|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에는 1140A1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및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타입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li> <li>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타입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플러스옵션 품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오피스텔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li> <li>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인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건립 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등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단위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된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하향식피난구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집광채광루버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li> <li>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견본주택, 안내자료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li> <li>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위치와 사양 등이 상이합니다.</li> <li>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 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액세서리류, 냉매배관박스,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타입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전기 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하천,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li> </ul> |

-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접에 의하여 단위실 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단위실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습니다.

7

## 기타사항

### ■ 기타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오피스텔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분양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위치별로 일부 높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차로의 폭  |
|-------------|-----------------------------|------------|
| 2.7m        | 2.3m (지하1층 택배차량 이동 동선 2.7m) | 6.0 ~ 7.0m |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건축·토목·기계감리         | 전기             | 통신           | 소방감리           |
|------|--------------------|----------------|--------------|----------------|
| 회사명  |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이지건축        |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 (주)정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11,613,611,570    | ₩2,052,215,836 | ₩363,792,000 | ₩2,349,706,733 |

### ■ 분양 보증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12025-104-0000100호 | 177,563,100,000원 | 분양광고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오피스텔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흄오토, 밸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 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 홈페이지 주소 : [www.prugio.com/blanc/ot](http://www.prugio.com/blanc/ot)

■ 분양문의 : ☎ 051-747-6333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속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 현장



현장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30-226번지 외 2필지 일원